

Abstract

Copyright Law Reform Issues in the United States

Jong-Su Yoon

Recently, It has ben stressed that Copyright Law of United States can be improved and should be refined in light of dramatic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digital and internet era. In 2010, 'Copyright Principle Project' group which consists of 20 experts, such as law professors and lawyers, released the report, 'Directions for Reform', including substantial reinvigoration of copyright, some changes in the role of the Copyright Office to modernize its functions and to take on some new roles, some refinements to the exclusive rights and to the tests courts use for judging infringement, a new safe harbor for those who undertake reasonable measures to inhibit copyright infringement. In March, 2013, the Register of Copyright, as the head of Copyright Office, released the article 'the Next Great Copyright Act' and proposed the comprehensive review and legislations of the copyright law. This proposal was dealing with the fundamental topics including offsetting copyright term, making room for Opt-outs, making the law more accessible as well as other minute issues. In Congress, the subcommittee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responsible for Copyright has held a series of hearings reviewing the copyright law since April, 2013. And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hich represents the executive branch, has issued a green paper on copyright reform,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This series of proposals has dealt with some major issues. For example, it was discussed whether the first sale doctrine should be modified to allow users to transmit digital copies of creative work. And opt-out system was considered which might serve the objectives of copyright law in some compelling circumstances, if appropriately tailored. Updating the exceptions and limitations is one of the main topics, such as providing the guideline of fair use, updating the baseline standards for libraries and archives,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그 동안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두드러진 성과가 없고 저작권 개혁 차원에서의 눈에 띄는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추급권(droit de suite)의 도입과 같은 특정 이슈들에 대한 소폭의 입법들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⁷²⁾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의 개혁에 대한 전망은 아직 확실한 그림을 그리기 힘든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고무적이다. 일단 현 저작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디지털과 인터넷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억지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소요된 비용들을 극복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정부 내에서 저작권 문제를 책임지는 저작권청과 상무부가 나서서 저작권 개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고, 의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그 논의도 제법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인들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저작권 개혁 논의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이미 해결된 이슈들도 있지만 대부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논의 내용으로부터 주요한 시사점과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저작권법에 관한 문제의식과 개혁에 관한 의지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저작권법의 논의가 단순히 현행법의 법리해석이나 보완에 그치거나, 저작권법 체계의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어설픈 권리확대에 그쳤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미국의 개혁논의가 기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72) <http://copyright.gov/legislation/> 참고.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방식이다. 이는 1976년 저작권법 개정 전까지 미 연방 저작권법에서 채택되었던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행정절차의 개선에 따라 오히려 그 때보다 갱신절차를 밟기가 더 용이한 만큼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고 해도 권리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저작권의 보호에 별다른 부정적 효과를 미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권리행사의 의향이 없는 수많은 저작물들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⁷¹⁾ 이러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제도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저작권법 개혁 논의는 학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연방 의회가 행정부와 함께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법에 의하여 저작권의 범위와 효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그 실효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정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그 동안 계속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이슈들을 망라하여 지속적으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논의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한편,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의 유지라는 대전제 하에서 자유이용의 확대 및 효율적인 이용 시스템의 모색과 함께 권리의 확대, 집행의 강화를 함께 논의하고 있어 과연 실제 어느 방향으로 유의미한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게다가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가 충돌되고 대표성 있는 참여자들의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가 현 저작권법의 근본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들도 많아 실제 저작권법 개혁의 전망이 밝은 것만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현 저작권법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법의 변화를 모색하다 보니 어느 정도 한계가

71) 베른협약은 제7조에서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저작자 사후 70년 중 20년에 한하여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베른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 게다가 권리자가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원래 규정된 보호기간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서비스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즉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른 상품과 결합된 다운로드 방식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곡당 라이선스가 아닌 포괄적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블랭킷(blanket) 방식의 라이선스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하다.⁷⁰⁾

5. 저작권 보호기간의 축소

저작권 보호기간 역시 저작권 개혁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라는 현재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너무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보호기간은 권리자에게 실효성 있는 이익을 제공하지도 못하면서 문화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저작권 보호기간은 조약 등의 국제 규범에 따라 영향을 받고, 미국의 논의 역시 국제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호기간을 다시 감축하는 입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제 규범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보호기간을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드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고아저작물에 관한 논의 역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많은 저작물들을 그 장기간의 보호에서 해방시키는 방안으로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과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논의, 즉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은 보존, 학술, 연구 목적으로 자유롭게 복사, 배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의견 역시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방식은 공정이용을 포함한 다른 저작권 제한 사유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20년 기간 동안은 까다로운 저작권 제한 사유의 적용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한다면 저작권 보호기간을 줄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 더 일반화시키면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마리아 팔란테의 개혁안에 제시된 것처럼 마지막 20년 동안의 보호를 위한 책임을 이용자에서 저작권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즉 5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정해진 등록절차를 밟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계속

70) 2006년 의회는 115조 개정법(SIRA)을 고려한 바 있는데, 115조의 라이선스 시스템에 디지털 이용을 위한 블랭킷 방식의 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입법되지는 않았다.

4. 이용허락의 업데이트

미국의 저작권법 개혁안 중 관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좀 더 효율적인 새로운 라이선스 방식이다. 그중에는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마이크로라이선스(micro-license), 자발적 집단 이용허락(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 사적·공적 저작권 등록(private and public registries)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대안적 보상체제(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ACS)라 하여 2003년을 전후하여 윌리엄 피셔(William W. Fisher) 교수⁶⁶⁾, 닐 네타넬(Neil W. Netanel) 교수⁶⁷⁾, 제시카 리트먼(Jessica Litman) 교수⁶⁸⁾ 등 몇몇 학자들이 제시한 제안들도 그 예를 같이 하고 있다. 위 이론들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되 따로 조성된 기금을 개개 저작물의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평한 보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 후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가 2008년에 자발적 집단 이용허락(Voluntary Collective Licensing)이라는 제목으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대안적 보상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⁶⁹⁾

입법적으로도 좀 더 효율적인 라이선스 방식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강제적 이용허락(compulsory licenses)의 확대나 개선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ECL 역시 강제적 이용허락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방식의 라이선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의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미 저작권법 115조의 기계적 이용허락(mechanical licenses)은 피아노를 시장을 어느 한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우려해서 100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사용료를 정하는 강제적 이용허락인데 더 이상 독점에 대한 우려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라이선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또한 현재의 디지털 음악

66) William W. Fisher, 『An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in Promises to Keep』,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http://cyber.law.harvard.edu/people/ffisher/PTKChapter6.pdf>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67) Netanel, N.W. "Impose a Noncommercial Use Levy to Allow Free Peer-to-peer File Sharing", 17 Harvard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1, 2003, <http://jolt.law.harvard.edu/articles/pdf/v17/17HarvJLTech001.pdf>.

68) Jessica D. Litman, "Sharing and Stealing", Draft, November 23, 2003.

69) <http://www.eff.org/wp/better-way-forward-voluntary-collective-licensing-music-file-sharing> 참조.

규정이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고 이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⁶²⁾ 이와 함께 고등교육을 위한 제한 사유의 확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976년에 도입이 무산되어 미루어졌다가 2002년에 비로소 도입된 원격 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⁶³⁾ 되는데, 최근 의회에서 우수한 교육자료의 생산을 위한 시장, 저렴한 라이선스 방식, 공정이용의 합리적 적용, 학문의 자유, 시각장애인 접근 가능한 포맷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 고등교육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확대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도입은 WIPO의 시각장애인 조약의 체결⁶⁴⁾로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리뷰단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에 있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가 2011. 12. 2. 개정 당시 제35조의3으로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면서 개별적인 제한 조항과 함께 일반 조항을 갖게 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제일 이상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아직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공정이용 조항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 알 수 없는 데다가 각 개별 제한 조항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 그 개선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적이용에 따른 제한 규정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⁶⁵⁾ 그동안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사적이용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고 공정이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 왔으나, 사적이용은 대부분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여서 변형적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공정이용의 불명확성 역시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 범위의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제한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62) 정책제안서, 24면.

63)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TEACH) Act of 2002. Pub. L. 107-273, Sec. 13301. 위 법은 원격수업에 있어서 수업자료의 디지털화와 저장, 복제 등을 허용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으로서 엄격한 기술적, 법적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64) http://wipo.int/pressroom/en/articles/2013/article_0017.html.

http://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241683.

65) CPP 보고서, 54면.

다는 점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다. 공정이용은 법원에서 4가지 요소를 고려한 복잡한 분석을 통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으로 사전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본 CPP의 보고서에서도 저작권청이 이해관계인들의 질의에 대한 일종의 유권해석인 의견서(opinion letters)를 작성해주고 이것이 축적되면서 일종의 기준이 형성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그밖에 학계에서 개별적으로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을 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갖는 태생적 한계 즉, 공적 구속성의 결여 때문에 과연 실익이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실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결국 보수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누구나 확실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에 한정될 것이라는 회의가 강해 그다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디지털네트워크 시대의 권리와 이용의 새로운 상생적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저작권집중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저작권상생협의체가 2010. 10.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공정이용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하고, 한편으로는 어렵고 난해한 법문 속에 존재하여 불확실성과 모호성으로 덮여 있었던 공정이용 법리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가능한 한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정이용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가이드라인 제정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정주체와 제정형식상 법규성을 갖지 못하는 데다가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합의를 얻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 가이드라인 역시 기존 법규의 해석과 판례를 정리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결국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⁶¹⁾

이러한 공정이용이 갖는 불명확성과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개별적인 제한 사유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도서관과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제한의 확대가 자주 거론된다. 도서관과 아카이빙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DMCA 개정에 따라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엄격한 조건하에 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최대 3개의 사본과 녹음물을 만들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61) 가이드라인안의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http://goo.gl/G0y2Z>, <http://goo.gl/S877K> 참조.

저작물에 대하여 개별적인 탐색과 교섭절차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므로 그와 같은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ECL이다. 정리하면 ECL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대표자들이 집단적으로 이용조건을 합의하면 이것이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인데, 이를 원하지 않는 권리자들은 옵트아웃을 통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여 그로부터 제외될 수 있어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배타적 권리 체제하에서의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저작권청은 이러한 옵트아웃 방식의 ECL의 도입을 의회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ECL을 어떤 종류의 이용에 한하여 도입할 것인지, 실제 어떠한 조건하에 옵트아웃 메커니즘이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파급력이 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ECL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을 통해 ECL의 도입이 시도되었으나 좌절된 바 있고,⁵⁹⁾ 그 후에도 ECL의 도입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ECL은 저작권자의 신원이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이용이 불가능한 이른바 고아저작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만큼 그 도입이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제도⁶⁰⁾는 개개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데에는 유용하나 대량의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의 확대

저작권의 예외와 제한의 확대는 미국 저작권법 개혁 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우선 공정이용 조항의 정비가 주요한 이슈이다. 저작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기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제107조의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제한이다. 그러나 권리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인들에게 이용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리스크로 인해 의도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

59) 홍유미, 윤종민,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제3권 제2호, 2012, 202면.

60) 저작권법 제50조.

원활한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고 거래비용을 줄여 사회적 후생을 늘린다는 관점에서 배타적 권리로 구성된 저작권을 채권적 보상권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어 왔다. 이른바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⁵⁷⁾에 의한 재산권의 보호 방법을 저작권에 적용하는 것이다. 점점 인격권적 요소가 희미해지고 재산권적 권리로 파악되고 있는 저작권의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이용은 자유롭게 하되 적절한 보상을 권리자에게 주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저작권을 배타적 권리로 파악하는 국제규범과 충돌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권리자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권 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제 채권적 보상권으로의 전환과 같은 효과를 갖는 제도들, 즉 강제 이용허락이나 법정 이용허락 등의 제도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오픈인에서 오픈아웃으로의 전환은 배타적 권리라는 저작권 체계의 기본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좀 더 수용이 용이한 편이다. 특히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정비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오픈아웃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오픈아웃 방식의 제도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이하 ECL이라고 한다)이다. ECL은 특정 유형의 저작물의 권리자들 상당수를 대표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의 계약이 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비 회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⁵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의 북유럽국가들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권리주체에 의한 개별적인 관리와 당사자 사이의 개별적인 교섭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여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인 이용자가 아닌 단체나 특정 영역의 이용자들이 함께 대량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집중관리단체로부터 포괄적 이용허락을 받게 되면 거래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법률관계의 간단한 처리가 가능하여 사전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집중관리단체가 필요한 저작물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확보되지 못한 나머지

57) 손해배상원칙(liability rule)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원에 대한 권리를 박탈 또는 침해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손해액(objectively determined value)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58) 오승중,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2007, 81면.